

## 반흔제거 수술비 지급기준

<개정 2010.1.21., 2012.1.1., 2016.3.1.>

① 반흔제거 수술비는 **화상으로 인한 반흔제거 수술비와 흉터 또는 반흔**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한다.

② 화상 반흔제거 수술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○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반흔제거 수술이 필요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.(단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)

-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반흔, 비후성 반흔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
- 각막손상,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
-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(귀)의 손실
-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반흔
- 모발,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 기형
-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위 비후성 반흔
- 기타 두경부·전박부·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등

○ 반흔제거수술비는 “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”에 고시된 기준을 준용한다.

③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외모에 **흉터 또는 열상 반흔**으로 인한 성형수술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○ 흉터 또는 반흔의 정도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여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.

- 장애등급 제 7급 12호 :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
- 장애등급 제12급 13호 :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

○ ‘외모’라 함은 두부·안면부·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분을 말한다.

**【 2012.1.1. ~ 2016.2.29. 적용】**

- 수술횟수는 2회 이내로 인정.

구 분	크 기	비 고
안면부	크기에 제한 없음	
팔·다리	상시 노출면의 흉터 5cm 이상	
상박·대퇴부	흉터 10cm 이상	·상박 :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위 ·대퇴부(넙적다리) : 골반에서 무릎관절

**【 2016.3.1.부터 적용】**
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」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등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.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,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인정
- 지급기준 : 1cm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지급